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9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㈜
임직원	-
외부감사인	□□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○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㈜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1년

○ □□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☆☆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○ 공인회계사 ◎◎◎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4시간

○ 공인회계사 △△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○ 공인회계사 ▣▣▣
- 주의

○ 공인회계사 ▲▲▲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4시간

○ 공인회계사 ◆◆◆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2시간

○ 공인회계사 XXX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4시간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㈜ >

○ **재고자산(용지) 및 부채(미지급비용·충당부채) 과소계상**

- 회사는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

○ **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(용지) 과대계상**

- 회사는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,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·중복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
< □□회계법인 >

○ **재고자산 및 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에 대한 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○ **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분양 완료된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비와 추정사업비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